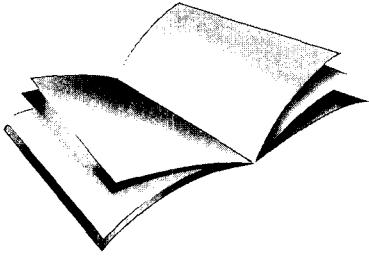


일본의 Agenda 21 국별행동계획의 개요



이태환경경영연구원 이진화

I 서 언

1992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환경회의의 강령의 성격에 갖춘 「Agenda 21」은 각국에 대한 국별행동계획의 준비 및 검토가 시사되어 뮌헨회의, 동경회의를 거쳐 선진7개국은 1993년말까지 「Agenda 21 국별행동계획」을 작성하여 공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12월 24일 정부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전문을 비롯하여 40장으로 구성된 「Agenda 21 국별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 바,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할 입장에 처한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전문의 내용과 각 장의 제시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므로써, 관계자 여러분께 참고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전문의 내용

• 제1장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서 각국의 조속한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즉, 선진국이 지구온난화방지등에 솔선하여 환경보전에 대응함으로써 전지적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대처능력 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국제사회전체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의 과정에 있어서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교량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바, 합의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환경분야의 정부개발지원(도상국지원을 1992년도부터 5년간 9천억~1조엔을 목표로 대폭 확충·강화할 것을 표명하였다.

또, UNCED에서 서명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구조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 체결과 더불어 1993년 11월에는 「환경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구환경을 포함한 환경보전의 기본적 이념과, 이에 따른 기본적 시책의 종합적 개요를 정하여 지속적 발전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종합적 또는 계획적인 시책추진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금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

① 지구환경에 부하가 적은 지속발전가능한 사회구축 및 국민의 생활방식 자체를 환경배려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몽·의식고양에 노력한다.

②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실효적인 국제적 기구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가, 공헌한다.

③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지구환경 Facility(GEF)」 개혁을 비롯한 자금공여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국제적

대응에 적극 참가한다.

④ 환경관련 기술개발추진에 노력함과 아울러 기술이전의 촉진, 정부개발지원의 적절 또는 계획적인 실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대처능력향상에 공헌한다.

⑤ 지구환경보전에 관하여 관측·감시와 조사연구의 국제적인 교류를 확보하고, 그 실시에 노력한다.

⑥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기업, 비정부조직(NGO)등 광범위한 사회구성주체간의 효과적인 교류를 강화한다.

금후 UNCED는 국제연합의「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CSD)」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하였다.

동시에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기타 국제기관, OECD, GATT 등 많은 국가간의 포럼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일본은 그러한 회의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양국간의 정책협의를 통하여 각국과의 정책조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이 행동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구환경보전의 실현을 향한 일본의 중요한 첫걸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은 금후에도 이 분야에 있어서 지구규모적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바, Agenda 21 시책의 착실한 실시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구축을 향하여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각장의 구성 내용

◦ 제2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국내정책으로서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촉진,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협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등 경제정책의 장려에 관하여 장기적인 시야에 입각한연구협력 등 기술향상·보급으로 국가와 환경보전이 조화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초생활분야를 적극 지원 및 실시한다.

◦ 제3장

빈곤퇴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곤층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식량증산과 안정공급의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개발을 추진, 인프라의 생산기반 정비에 의한 산업육성을 통하여 빈곤층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등 초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가족계획의 지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 제4장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소비전환을 위하여 경제적 수법·규제적 수법과 국민·사업자의 역할로서 리사이클 활동추진,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정비, 국가정책 및 전략정책으로 대응한다.

◦ 제5장

인구문제는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의 중요성 시사와 더불어, 개발과 인구증가의 비례적 관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 개발, 인구라는 3가지 요소를 과학적으로 학술적·국제적 견지에서 조사연구를 추진한다.

◦ 제6장

인류건강의 보호와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Basic Health Care Needs의 충족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 예방 및 억제에 위한 의학계의 기술발전, 고령자·장애자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강화하며, 도시부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응, 환경오염과 환경상의 위험요소에 의한 건강리스크를 저감시킨다.

◦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주거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인간주거관리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촉진, 환경관련 사회기반시설인 수도·위생·배수 및 고품폐기물의 계획적 관리와 인간주거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취약지역에 있어서는 인간주거계획·관리대책 수립에 기인하는 지속가능한 건설산업활동을 촉진한다.

• 제8장

의사결정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계획·관리 차원에서 상호유기적인 교류를 종합적 또는 계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이에 효과적인 법령제공과 경제제수단, 시장 등 유효한 수단을 이용하여 통합된 환경·경제감정시스템을 확립한다.

• 제9장

지구규모의 대기보전에는 경제활동의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과학적 기초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방지와 월경대기오염에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를 강화한다.

• 제10장

육상자원의 계획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국토의 자연조건을 경제·사회·문화등에 관한 시설의 종합적 견지에서 이용·개발·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책정하며, 이에 따른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정비하여 적정 또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해 나간다.

또한, 데이터와 정보관리에 있어서 각종 정보정비사업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폭넓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 제11장

삼림감소대책 있어서 전체적 삼림형태와 임지 및 임목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삼림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 및 보전강화·삼림재생·조림 및 기타 재생수단을 통한 황폐지의 녹화를 도모한다. 또한, 삼림 및 임목지에 의해 제공된 재정서비스의 충분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이용과 평가를 촉진하며, 상업매매와 가공을 포함한 삼림 및 관련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계획, 평가, 계통적 관찰에 관한 능력을 확립·강화해 나간다.

• 제12장

취약한 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사막화와 간척사업을 방지하고, 경제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지식강화 및 정

보·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며, 특히 토양보전·조림 및 재조림강화를 통하여 토지황폐를 막는다. 이에 다각적인 국제교섭과 비정부조직(NGO)의 경험교류 및 대응능력의 향상·지원에 노력한다.

• 제13장

환경과 지속가능한 산지생태계 개발에 대한 지식보급을 강화하여 산지와 수자원,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산지지역의 생산기반·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계속하여 생식하는 동식물종과 분포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생태계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축적한다. 또한, 종합적인 하천유역개발을 위하여「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을 책정하여 하천내의 특성에 따라 자연을 보전해야 할「자연보전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하천관리를 실시한다.

• 제14장

지속가능한 農政과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자연환경보전 등 국가경제사회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상에 다각적 또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농업을 활성화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한다.

또한, 열대림감소와 사막화진행 등의 문제에 접근하여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의 확립을 위한 국제적인 교류에 적극 참가한다. 오존층감소에 의한 동식물에 대한 자외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외선에 의한 농작물의 생육, 품질이상을 조사연구한다.

• 제15장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는 국가차원의 전략, 계획등을 책정하며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국토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자연의 체계적인 보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중요한 생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각 특성별 자연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지정목적 및 자연특성에 따라 적절히 관리한다. 또한, 생태계현상과 변화에 대한 정보축적, 갭신 추진과 더불어 국제적·지역적 협력과 협조로 효과적인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 제16장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환경상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식량·사료 및 재생가능한 원재료의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므로써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학문적 성과를 의약품개발과 연결시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기초적·기반적 연구를 급후 계속 지원한다. 또한, 환경보호를 강화하여 미생물에 의한 화학물질의 처리기술 개발과 폐기물의 처리·리사이클, 환경부하가 작은 생산공정을 개발·보급하며, 환경면에서의 안정성향상과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메카니즘 확립에 더욱 노력한다.

◦ 제17장

해양, 폐쇄성 및 준폐쇄성해역을 포함한 전체 해역 및 해안보호와 생물자원의 보호, 합리적인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추진하고, 국가는 계획책정 및 계획실현에 적극적으로 지방공공단체를 지원한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해역정화대책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의 수역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힘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 및 기후변동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지역협력을 비롯한 국제협력 및 조정을 강화해 나간다.

◦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를 위하여 수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이에 「전국종합수자원계획 (Water Plan 2000)」책정과 광역적인 용수대책을 시급히 시책하여 2000년을 목표로 한「수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수자원·수질 및 수계생태계의 보호로 위생적인 음료수 공급과 계속적인 상수도 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수도보급률 99%를 달성한다.

도시발전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공급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10년에 1회 수자원개발시설정비를 추진하다. 급후 확보해야 할지속가능한 곡물생산과 농촌개발을 위한 물공급에 노력하고,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동에 있어서「지구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기본계획」,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관측·감시 및 기술개발의 종합적 추진에 대하여」및「지구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에 적극 대응한다.

◦ 제19장

유해 및 위험한 제품의 위법한 국제적 이동방지를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상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화학적 리스크의 국제적 평가를 확대하여 관리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의 조화를 위하여 국제화학물질안전성 프로그램 (IPCS), OECD, 국제노동기관 (ILO), 국제海事기관 (IMO), 기타 국제연합기관 등과 활발히 교류한다. 또, 리스크 삭감대책의 실시에 있어서 화학물질관리능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제20장

유해폐기물의 위법한 국제적 이동방지를 비롯한 유해폐기물의 환경상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배출사업자 책임에 의한 유해폐기물처리를 철저히 하고, 감량화·무해화에 적극 노력한다. 또한, 유해폐기물관리를 위한 조직·제도적 능력 축진을 강화하며, 국경을 넘는 이동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강화하여 유해폐기물의 불법한 국제이동을 방지한다.

◦ 제21장

고형폐기물 및 하수도 관련문제의 환경상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환경상 적절한 폐기물의 재이용 및 리사이클을 최대화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처분을 촉진한다. 또한, 폐기물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쓰레기의 84% 가량이 처리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를 위한 시설정비를 도모한다.

◦ 제22장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또는 환경상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는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는「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에 기인하여 자금확보, 연구개발추진, 국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계획적 또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핵원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방사선 장애방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으로 그 저장, 수송, 처리,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를 실시한다.

• 제23장

지속가능 또는 공평한 개발을 위한 여성의 행동에는 남녀공동 참여형 사회를 형성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 실시를 추진한다. 또한, 「개발과 여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환경보전분야에 여성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제24장

Agenda 21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각국가 정부에 따라 합의된 목표, 정책 및 메카니즘의 효과적인 실시 에 의한 전체적 사회집단의 합의와 깊은 관심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달성을 위한 기본적 조건중의 하나는 정책결정의 폭넓은 국민의 참가로서 개인·단체 및 조직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적극 동참한다.

•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어린이 및 청년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깊게 심어주어 자신의 의사로 적극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정규수업과 행사로 환경교육을 더욱 고취시킨다.

• 제26장

지역주민 및 그 사회역할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물질적 복리를 고려하고 환경상 걱정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그 공동체의 역할을 인식하며, 적응·발전 및 강화시켜 나간다.

• 제27장

환경분야에 관련하는 비정부조직 (NGO)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보조금제도, 소규모 무상자금 협력, 국제봉사貯金제도, 비정부조직국제건설협력지원사업등을 실시함으로써 비정부조직 (NGO)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파트너로 인식을 높인다.

• 제28장

Agenda 21 지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지방의제 21」은 그 책정시에 시민참가는 추진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방법,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문서로 의견을 공모하는 방법, 앙케이트 조사에 의해 의견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의제 21」의 기본목표는 환경보전형 생활패턴을 정착시켜 환경을 배려한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환경분야에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제29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고용의 변화에 최전선에 위치한 노동자 및 그 단체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여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또한, 노동자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양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환경교육·환경학습 실시에 노력한다.

• 제30장

산업계의 역할에 있어서 제조과정시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이바지하는 기술의 실용화개발 및 설비도입에 대하여 민간조직을 경제적, 제도적으로 계속 지원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행동계획 및 오존층보호법에 기인한 제반시설을 추진해 나가며,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적합성을 갖춘 환경감사의 규격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제31장

과학 및 기술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단체, 의사결정자 및 일반사회간의 의사소통과 협조관계를 개선하여 관계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평가·보급하기위한 워크샵,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 그 유통을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한 행동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장려한다.

◦ 제32장

농민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 「환경보전형농업지도추진사업」은 전국규모의 농약·비료등 자재투입 저감에 대한 農家인식을 고양시켜 스스로가 창의연구에 의하여 환경에 우수한 농법전개를 도모하는 운동을 추진한다.

◦ 제33장

자금융 및 메카니즘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정부개발원조 (ODA)에 의한 경제사회기금 및 기초생활분야의 준비를 통하여 더욱 건전한 경제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분야의 원조실시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과 공동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며, 정책대화를 통하여 적절한 안건을 결정한다. 또한, 지구환경기관 (GEF)에 대한 자금협력 면에서 중심적역할을 맡으므로써 Agenda 21에 표명된 지침에 따라 GEF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된 국제기관으로는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과 국제연합개발계획(UNDP)등이 있다.

◦ 제34장

환경상 적정한 기술이전, 협력 및 대응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지역적및 국제적으로 연결된 국제정보 네트워크를 개발한다.

이에 필요한 기술이전의 부문을 지지및 촉진하여 국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환경상 적정한 기술개발·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사업단 등을 통한 각종 분야에서의 환경기술계에 연수생 파견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발한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연구센터의 네트워크화를 확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데이터 등의 정보를 참가 각국에게 제공하는 등 다국간의 네트워크활동을 지원한다.

◦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장기적인 시야에 입각하여 사회적·경제적·자연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선택의 폭을 정책입자, 일반국민 등에게 제공하여 각각의 불확실한 환경과 개발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조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성을 향상시킨다. 「지구권·생물권국제협동연구계획 (IGBP)」 「세계기후연구계획 (WCRP)」 「지구변동의 인간적 차원 국제협동연구계획 (HDP)」 등의 세계적인 연구계획과 교류를 도모하면서 지구적 규모의 제반현상에 대한 해명연구와 인간활동과 지구환경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자연과학에 인문·사회과학적 시점을 포함한 학제적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과학적 평가를 향상시킨다.

◦ 제36장

교육·의식개발·연구추진에 있어서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을 재편성하여 국민이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환경학습을 정비한다. 또한, 의식개발의 추진으로 환경에 관한 이해를 깊이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각 주체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킨다.

국가및 지방공공단체의 환경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행정 및 기술측면에 있어서 연수를 실시하여 국제협력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알맞는 교육과 학술교류로 국제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 제37장

개발도상국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본의 메카니즘 및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Agenda 21의 국내여론 및 대처능력향상의 전략을 형성하여 경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기존의 각종 국가계획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사고를 한층 명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의 메카니즘 및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집단연수 및 국별연수를 실시하고, 기술협력을 부가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과 연수생 수용으로 공동연구개발 실시, 조사협력등의 시책을 계속 실시한다.

◦ 제38장

국제적인 기구의 정비로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CSD)의 역할을 정비·강화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심의를 실시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 국제사무국,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

하여 정책조정 · 지속가능한 개발국은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지원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체제실현을 향하여 노력한다.

• 제39장

국제법 조치 및 메카니즘 형성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환경과 개발에 관한국제적인 대응이 비교적 단기간의 교섭에 의해 성립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현재, 해양오염방지, 오존층보호, 유해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규제, 생물종의 보호, 지구온난화 방지 등 각각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나, 금후는 대규모적인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검토에 대하여 UNEP 및 국제연합총회에 있어서 환경관련조약간의 혹은 무역문제 등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분쟁조정의 해결수단 활용을 한층 강화하고, 기존의 분쟁처리 메카니즘간의 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제40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확 또는 적절한정보를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집 · 정비해야 한다. 대기 · 공공용수역의 수질 · 지하수 · 토양 등의 환경오염상황과 생물상을 포함한 자연환경상황을 감시 · 관측 · 조사하여 체제, 내용 및 수법을 체계화한다. 또한, 국제적인 활동으로서 「UNEP/GRID(지구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지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정비 · 제공을 개시하여 국제적 · 학제적인 지구환경연구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정보의 상호이용을 도모한다.

Ⅳ 결 어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본 정부는 인류의 생존기반인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솔선수범함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등의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계획이 조속히 마련되므로서 국민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하며,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변 경 안 내

귀사의 건강과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희망하오며 그 동안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보전협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거설립)의 명칭과 대표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 아 래 —

변 경 전	변 경 후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
회장 정 수 창	회장 김 상 하